

자료조직 측면에서 독도표기 문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Dokdo Notation Problem in Terms of Library Materials Organization

남 태 우(Tae-Woo Nam)*
전 말 숙(Mal-Suk Chun)**
정 연 순(Yon-Soon Chung)***
장 로 사(Ro-Sa Chang)****

목 차

- | | |
|-----------|----------------------------|
| 1. 서 론 | 4. UN 및 국가기관에서의 독도표기 현황 분석 |
| 2. 이론적 배경 | 5. 문헌분류표에서의 독도표기 현황 분석 |
| 3. 독도표기문제 | 6. 결 론 |

초 록

미국 의회도서관이 독도(Tok Island)에 관한 주제어를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로 변경추진에 따른 논란을 계기로 독도의 일반적인 현황과 표기 문제 및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기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 검토를 바탕으로 문헌정보학 자료조직 분야에서 KDC, LCC, NDC의 독도표기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향후 도서관계의 역할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U.S. Library of Congress proposal to change the subject heading of Tok Island(in Korea called Dokdo) to Liancourt Rocks was controversial. Therefore the status of Dokdo, national notation(Dokdo or Tokdo), and international notation used to identify the island were examined. In this examination, Tok Island's classification in the Korea Decimal Classification(KDC),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LCC), and Nippon Decimal Classification(NDC) were compared and analysed, and a proposal for the role of libraries in the future was given.

키워드: 독도, 리앙쿠르 록스, 독도표기, 미국 의회도서관, KDC, LCC, NDC

Library of Congress, Dokdo, Liancourt Rocks, Dokdo notation,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Nippon Decimal Classification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namtw@cau.ac.kr)

** 중앙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박사과정(reverber@sdi.re.kr)

*** 중앙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박사과정(funlib@ice.go.kr)

****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rsjang120@empal.com)

논문접수일자: 2008년 11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08년 11월 19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11월 30일

1. 서론

우리나라의 3,153개 섬 중에 46번째로 큰 섬인 독도는 행정구역상으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부여되고 있으며, 문헌상·역사적으로도 증거가 되는 우리나라의 섬이다.

그러나 독도를 일본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면서 독도의 영유권 분쟁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2008년 7월 14일 미의회도서관이 주제어 편집회의에서 독도 표기를 '독도(Tok Island)'에서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독도는 한 순간에 국제적인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미의회도서관측은 변경사유를 미국지명위원회가 '독도'를 '리앙쿠르 록스'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독도표기에 대한 문제가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 논쟁이 되자 현재 주제어를 현행 '독도'에서 '리앙쿠르 록스'로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하려던 계획을 보류한 상태이다.

독도가 섬(islands)에서 록스(rocks)로 주제어 변경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자료분류표 상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즉, 섬은 국제법상 영유권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암석은 영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독도를 암석으로 규정하면 한국의 실효적 지배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할 국제적 근거로 이용될 수도 있다.¹⁾

미국 의회도서관의 독도 주제어 변경 움직임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김하나씨²⁾는 독도 명칭이 '리앙쿠르 록스'로 바뀌게 된다면

다음 단계는 '일본해의 섬'으로 주제어 목록이 바뀔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한국, 일본의 국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독도의 명칭 표기현황과 LCC, KDC, NDC에서 사용하고 있는 독도의 명칭 표기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KDC 5판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독도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 사회적으로는 많이 수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독도의 명칭표기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논쟁을 가지고 처음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문헌정보학적 분야에서 최초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독도의 지정학적 위치

독도는 우리나라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섬으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에 속하며, 동경 131도 52분, 북위 37도 14분에 위치하고 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라는 2개의 주된 섬과 주변의 36개의 작은 암초들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섬이다.

일본에서 봤을 때 독도는 시마네현 오키섬 북서 85 해리(북위 37도 9분, 동경 131도 55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히가시지마(메지마), 니

1) <<http://www.chosun.com/>>. [cited 2008. 11. 03].

2) 사서. 북미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 한국분과위원회장.

시시마(남도)로 불리는 두 개의 섬과 주변의 수십의 암초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섬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인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7.4km 떨어져 있으며, 일본의 오키 제도에서는 약 157.5km 떨어져 있다. 한반도에서의 거리는 약 216.8km, 일본의 혼슈(本州)에서는 약 250km이다(그림 1 참조).³⁾

2.2 독도의 역사적 배경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문헌상으로 우리나라의 영토이다. 이를 증명할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1 신라시대(B.C 57~935 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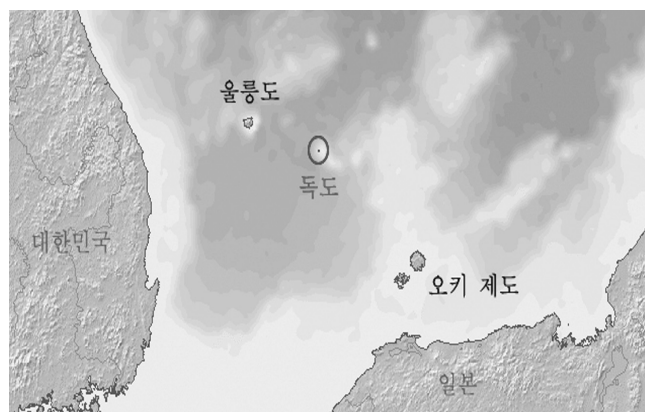
독도가 우리나라의 고유영토가 된 것은 삼국 시대인 서기 512년(지증왕 13년)에 于山國이 신라에 통일되어 그 일부가 된 때부터이다. 이 사실은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와 『列傳』

異斯夫조에 두 차례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때 신라에 통일된 우산국의 영토에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도 포함됐는가를 질문하는 학자도 있다. 이에 대해 1808년 조선왕조가 편찬한 『萬機要覽』軍政編에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松島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인이 1904년까지는 독도를 마츠시마(松島)라 불렀음은 모든 일본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그 명칭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독도를 우산국으로 호칭해 왔는데, 이것은 우산국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독도는 우산국이 신라에 통일된 서기 512년부터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인 것이다.

2.2.2 고려시대(918~1392)

우리나라는 태조 13년(930)에는 본토와 朝貢 관계를 유지하였으며(고려사 권1), 11세기 초(현종9년)에는 우산국에 관원을 파견하여 통치권을 행사하였다.



<그림 1> 독도의 지정학적 위치

3) <<http://ko.wikipedia.org/>>. [cited 2008. 9. 20].

1141년(인종 19)에는 溟州道監倉使 이영실이 울릉도에 관원을 파견하여 특산물을 진상케 하였으며, 1157년(의종 11)에는 본토인의 이주를 위한 조사를 하였으며, 1243년(고종 30)에는 본토인의 이주를 추진하였다(고려사 권4).

2.2.3 조선시대(1392~1897)

고려말기에 왜구가 크게 발호하여 우리나라 해안에 대한 노략질이 심할 때 울릉도 거주민들도 여러 차례 심한 노략질을 당했다. 태종은 그 대책으로 1417년 울릉도 거주민을 본토로 이주시키고 울릉도를 비우는 空島政策을 실시하였다. 이때 본토로 데려온 울릉도 거주민들이 다시 도망하여 울릉도로 들어간 것을 거듭 刷還해 오는 과정에서 당시 독도가 우산도라는 공식명칭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세종(세종 14년, 1432)은 태종을 계승하여 독도에 대해 계속 공도정책을 실시하면서도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된 조선영토라는 사실을 『世宗實錄地理志』에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규정해 두었다.

“우산(즉 독도)과 무릉(울릉도)의 二島가 울진현 正東의 바다 가운데 있다. 이도가 서로 멀지 아니하며,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시대에는 우산국이라고 칭하였다...”

조선왕조는 이어서 조선영토에 대한 유권적 규정과 해설을 한 『新增東國輿地勝覽』(1531년 편찬)을 간행하였는데, 이 책에서 수록된 지역은 바로 조선영토임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문헌이다. 이 문헌에 의하면 “독도(우산도)와 울릉도를 행정구역상으로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영토”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부속지도를 제작해 붙였는데, 울릉도와 독도를 2개의 섬으로 동해 가운데 그려서 우산도가 완전히 별개의 섬이고 조선영토임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늦어도 15세기에는 조선이 독도를 분명히 인지하였다는 사실은 일본인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기록문헌으로 1667년 편찬된 『隱州視聽合記』에서는 일본 최초로 울릉도와 독도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다. 울릉도와 독도는 고려(한국)에 속한 것이고, 오키노시마는 일본에 속한다고 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 최초의 독도 관련 문헌인 『隱州視聽合記』는 관청보고서인데, 여기서도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명확히 해주고 있다.

1699년에는 최종외교문서의 교환이 끝나서 일본 측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재확인하는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신용하 1996).

17세기말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덕천막부 관백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재확인한 후에는 덕천막부시대 일본 문헌 중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한 건도 없다. 또한 17세기말 이후 일본의 관찬 및 준관찬 古地圖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표시했다.

1785년에는 일본의 대표적 학자 중 한사람인 히야시 사헤이(임자평 1738~93)가 『三國接壤地圖』라는 지도를 제작하였다. 여기서 동해(일본해)의 두 섬을 ‘松島’와 ‘竹島’로 표기하고 ‘두 개의 섬이 모두 조선의 영유임’을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울릉도와 독도가 모두 조선영토임을 명백하게 표시하였다.

2.2.4 대한제국시대(1897~1910)

1900년에는 대한제국이 칙령 41호로 독도에 대해 이를 울도군수 관할지역으로 하여 통치권을 행사하였다.

1905년 1월에는 일본이 독도를 '無主地'라고 정하고 독도를 "무인도는 타국이 이를 점령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형적이 없기 때문에 일본영토에 편입하여 『竹島, たけしま(다케시마)』라고 명명한다"라고 함으로써 소위 '무주지 영토편입'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영토편입이 되지 않는 잘못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라 분명 우리나라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본해군은 1905년 7월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였으며, 1906년 4월에야 독도가 일본영토로 편입되었음을 한국정부에 통보하였다. 이때는 이미 1905년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된 뒤였다.

대한제국은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미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일본에 대한 항의 및 추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指令 제3호로서 '독도는 대한제국영토임을 재확인'하였다.

2.2.5 일제식민시대 이후(1910~)

1910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본토와 독도를 포함한 부속도서 전부를 식민지로 강점하였다. 해방 후인 1946년 독도는 SCAPIN 제 677호에 의해 미군정에게 이양되고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대한민국으로 넘어왔고 현재까지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로 존재하고 있다(유영욱 1996).

2.3 한·일 분쟁지역으로서의 독도

한·일 양국 간에 파생된 독도문제의 발단 배경은 원인과 근인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원인으로는 독도를 어느 측이 먼저 인지했느냐는 사실과 함께 어느 측이 經略해 왔느냐가 문제시된다.

일본 측은 독도 인지 사실을 제기하고 있는 근거자료로서 『隱州視聽合記』, 『竹島圖說』, 『長生竹島記』, 『隱岐古記集』, 『竹島考』를 들고 있다.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고 있는 『隱州視聽合記』는 일본 이즈모 지방의 번사였던 사이토가 은주번주의 명의로 1667년에 편찬한 풍토기이다. 『竹島圖說』은 『隱州視聽合記』가 발간된 지 근 1세기가 지난 1751-1763년 무렵에, 『隱岐古記集』은 1803년에, 『竹島考』는 1828년에 발간되었다. 이 자료들은 시기적으로도 늦게 출간된 것일 뿐 아니라 편찬자가 독도를 직접 탐방하거나 목격하고 쓴 것이 아니라 독도에 출어했던 어부들로부터 전해들은 말이나 옛 노인들로부터 들은 구비설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게다가 독도와 울릉도의 일본식 명칭인 '竹島'와 '松島'의 구분이 모호하다.

일본 측은 이러한 자료들을 내세워 독도 인지 사실이 한국 측보다 앞섰다고 주장하며 독도 경략 또한 1618년 요나코무라의 상인 오타니와 무라카와 양가가 막부의 도해면허를 받아 울릉도에 도항하였고, 항해과정에서 독도를 지나갔거나 풍랑을 만나면 임시로 그곳에 거처했다고 한다. 그리고 때로는 독도에 대한 별도의 도해면허를 발급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즈음 우리나라 숙종 1년에 안용복이라는 인물이 동해로 출어를 나왔다가 왜인들을 만나 그들을 쫓아낸 바 있는

데, 일본 측은 이와 관련된 『肅宗實錄』의 내용을 불신하고 자기들이 쓴 『안용복도래기』를 내세워 안용복의 진술은 기만에 찬 허위라고 하면서 우리의 空島政策을 영유권의 포기인 양, 일본 측이 먼저 독도를 인지하고 경략해 왔다고 주장함으로써 독도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것이 독도문제 발단의 원인이다.

문제의 근인으로는 1904년 9월 29일 일본 상인 나카이 자부호가 리앙코 섬 영토 편입 및 대하원을 일본 내각에 제출함으로써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케 한데서 발단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1905년 2월 22일 오키섬으로부터 서북쪽 85해리 지점에 있는 도서를 竹島, たけしま(다케시마)라 명명하고 이 섬을 시마네현(島根縣) 소속 오키 도사 소관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그때부터 독도는 완벽하게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대일평화조약 중 영토조항에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지역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를 앞세워 일본은 1951년 한일회담 개최 때 독도문제를 들고 나왔으며, 1952년 12월 이승만 대통령이 인접 해양에 관한 주권 선언을 공포하자 이에 대해 즉각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므로 독도를 '이승만 라인'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의 각서를 보내왔다. 그리고는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 독도를 양국 간의 분쟁 대상 지역으로 기정사실화하고자 했다(양태진 1996). 일본은 현재까지도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앞의 2.2절에서 살펴보았

듯이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분명하게 증명되고 있다.

3. 독도표기문제

3.1 독도 관련 일반 현황

3.1.1 사전적 측면

영어권에서 가장 오래된 일반 백과사전인 브리태니커 백과사전(한국판⁴⁾과 영문판⁵⁾ 옥스퍼드 백과사전 온라인판⁶⁾에서 독도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여부와 부여된 명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브리태니커 백과사전(Encyclopedia Britannica)

한국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는 독도에 대한 개요, 자연환경, 영유권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온라인 영문판에서 현재 혼용되고 있는 Liancourt Rocks, Take-shima, Tok-to, Tok-do, Chuk-to, Hornet Island, Dogdo Island, Dog-do와 같은 독도의 명칭으로 검색하여 본 결과 백과사전 안에 독도에 대해 수록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편집진들에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다음 개정 시에 반영되도록 하는 국제적인 노력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4) <<http://www.britannica.co.kr/>>. [cited 2008. 10. 01].

5) <<http://www.britannica.com/>>. [cited 2008. 10. 01].

6) <<http://dictionary.oed.com/>>. [cited 2008. 10. 01].

2) 옥스퍼드 백과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

옥스퍼드 백과사전 온라인 판에서 현재 혼용되고 있는 Liancourt Rocks, Take-shima, Tok-to, Tok-do, Chuk-to, Hornet Island, Dokdo Island, Dok-do와 같은 독도의 명칭으로 검색하여 본 결과 백과사전 안에 독도에 대해 수록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과 마찬가지로 옥스퍼드 백과사전 편집진들에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다음 개정 시에 반영되도록 하는 국제적인 노력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3.1.2 행정적 측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독도의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등 행정적인 측면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독도의 주소

독도의 주소 부여여부와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명정보서비스에서 독도주소를 검색하였다. 그 결과 독도에 주소를 부여하고 있으며, 부여된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명기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國土地理院⁷⁾에 검색해 본 결과 주소를 부여하고 있으며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시마초 다케시마 국유 무번지(島根縣 隱岐郡 隱岐の島町 竹島 官有無番地)로 부여하고 있다.

2) 독도의 전화번호

독도의 전화번호 부여여부와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국 114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우리나라 대표인터넷 114서비스인 Let's 114에서 독도의 전화번호를 검색하였다. 그 결과 독도에 총 7개의 전화번호가 부여되고 있으며, 054는 경상북도, 0502는 특별지구를 부여한 것이다. 부여된 전화번호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독도에 부여된 전화번호

지명	전화번호
독도경비대	054-791-1991
독도관리사무소	054-791-1693
대한민국독도사랑	0502-883-3002
대한민국	0502-002-1003
독도사랑회	0502-002-2424
한국방송공사	054-791-0059
독도항로표지관리소	054-791-1161

반면 일본의 경우 전화번호가 검색되지 않았다. 이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3) 독도의 우편번호

독도의 우편번호 부여여부와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Let's 114에서 독도의 우편번호를 검색하였다. 그 결과 독도에 우편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부여된 우편번호는 799-805로 나타나고 있다. 799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을, 805는 독도리를 부여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日本郵便⁸⁾에서 검색한 결과 독도를 685-0000으로 부여하고 있다. 685부분은

7) <<http://www.gsi.go.jp/>>. [cited 2008. 11. 01].

8) <<http://www.post.japanpost.jp/index.html>>. [cited 2008. 11. 01].

우편시스템에서 제공하는 區別 번호로 시마네현 오키군을 의미하고 0000은 町域 번호로 주소 일부에서 언급되었듯이 무번지임을 나타낸다.

3.1.3 통계적 측면

우리나라의 통계청이 운영 중인 국가통계포털(KOSIS)에는 독도관련 통계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서 행정구역 분류의 최소단위인 동·읍·면보다 하위 단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구·산업 등이 거의 없어 공식 통계 작성의 실익이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독도관련 통계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 이라고 통계청은 해명하고 있다. 해양, 식물 또는 동물에 대한 자원의 통계치는 최소한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일본의 국토지리원은 홈페이지 통계자료에 각주까지 달아가면서 독도를 시네마현(島根縣)의 일부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독도에 대한 각종 통계지표나 기준을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1.4 정치적 측면

우리나라의 국회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005년, 제7497호), 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1997년, 제5447호),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06년, 제7955호) 및 문화재 보호법(1973년, 제2468호)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독도관련 법령을 특별법 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회는 독도관련 특별위원회를 격상시켜 상설화하는 방안을 여야 간에 합

의했다. '독도표기 및 영유권 연구 T/F'를 운영 하여 독도표기 및 영유권과 관련한 해외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국회차원의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독도표기 대응 매뉴얼조차 완성하지 못한데다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독도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한 뒤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3.1.5 도서관계 측면

우리나라의 국회도서관은 도서관 내 독도자료실 소장자료 8,622건 중 독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외국에 알려지지 않은 한국 및 동양자료 약 310건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외국어로 번역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번역된 자료를 국제자료교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미의회도서관 등 326개 기관의 해외도서관과 공유하고, 영어를 우선으로 번역하되 향후 프랑스어·스페인어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 있다.

국회도서관의 이와 같은 독도관련 자료의 발굴·번역 사업은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을 입증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3.2 미국 의회도서관에서의 독도표기문제

2008년 7월 14일 미의회도서관이 주제어 편집회의에서 독도표기를 '독도(Tok Island)'에서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독도는 한 순간에 국제적인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독도표기에 대한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 7월 14일 미의회도서관이 주제어

(SACO) 편집회의에서 독도표기를 ‘독도(Tok Island)’에서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로 변경 추진하였다.

동시에 그날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명기를 강행하였다.

하루 뒤인 2008년 7월 15일 미의회도서관이 독도 관련 주제어 변경 보류방침을 주미한국대사관에 통보하였다.

그 후 2008년 7월 24일 미국지명위원회(USBGN)는 독도의 영유권 관련 조항을 주권 미지정(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7월 27일 미국지명위원회(USBGN)는 미국국가안보회의(NSC)측에 영유권 표기변경은 관련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정치적 고려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통보하였다.

7월 29일 주제어를 현행 ‘독도’에서 ‘리앙쿠르 록스’로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하려던 미의회도서관은 공식적으로 독도 명칭 변경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태이다.

3.3 주제명표목에서의 독도표기

정보검색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도구는 목록이며, 목록에서 가장 기본적인 접근점(access point)은 그 목록을 형성하는 각 저록(著錄, entry)의 표목(標目, heading)이다. 표목은 목록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색인, 초록, 컴퓨터에 의한 정보검색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목은 목록에 있어서의 검색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한 목록기록의 첫머리에 위치한 이름이나, 낱말이나 혹은 문구라 할 수 있다. 표목은 한 저록의 첫머리에 위치한 필수적인 구분이며, 한 저록은 목록을 형성하는 기본단위라고 말할 수 있다(남태우 1982).

독도 관련 정보를 검색하려면 기본적 접근점이 되는 표목을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인 주제표목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미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LCSH: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LCSH 저록

Tok Island(Korea)
UF Dogdo Island(Korea)
Dok-do(Korea)
Dokdo(Korea)
Hornet Islands(Korea)
Kaji Island(Korea)
Kajido(Korea)
Liancourt Rocks(Korea)
Sambong-do(Korea)
Sambong Island(Korea)
Take-shima(Korea)
Tok-do(Korea)
Tok Islands(Korea)
Tok-to(Korea)
Tokdo Islands(Korea)
[Former Heading]
Tokto(Korea)
BT Islands--Korea(South)

상기의 채택된 표목어는 17개의 저록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괄호 속의 지정학적 위치를 한국으로 기입되고 있다. 기본 저록어로 ‘Tok Island’로 기입되어 있다. 또한 UF 저록어는 15개 항목으로 기입되었는데 그중 ‘다케시마’도 저록어로 되어 있는데 지정학적 위치를 ‘한국’으로 표기되어 있기까지 하다.

LCSH에서는 한글을 로마자화 하면서 M-R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표목은 독도를 로마자화하면서 일반 지명으로 섬을 나타내는 부분인 '도(島)'는 Island로 표기하고 있다. 여기서 Dok-do, Dokdo, Tokto는 독도를 다르게 로마자화한 모양들이다. Tok Island의 형태로 채택된 이 주제 표목은 괄호 안의 지리 한정어로도 독도가 명백히 한국에 소속된 지명임을 보여주고 있다(윤정옥 2001).

한편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제명표목표에서 독도 관련 주제명표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미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표목어보다 좀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KDC와 DDC를 지리구분에서만 접근하여 각각 981.1829, 915.19로 분류번호를 할당하여 역사상의 지역구분이 빠져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표 3>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서 독도 관련 용어

용어	관련용어
독도[獨島]	KDC 981.1829 DDC 915.19 ENG Dok I. UF 삼봉도[三峰島] UF 가지도[可支島] UF 우산도[于山島] WLL 초중고 수준 BTI 섬(지형)[島] RT 다케시마[竹島] RT 울릉도[鬱陵島] RT 독도 문제[獨島問題] RT 독도 영유권[獨島領有權] RT 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법률) [獨島等島嶼地域--生態界保全--關--特別法] RT 독도 수비대[獨島守備隊] RT 독도 경비[獨島警備]
독도 경비[獨島警備]	RT 독도[獨島] RT 독도 의용 수비대[獨島義勇守備隊]
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법률) [獨島等島嶼地域--生態界保全--關--特別法]	BT 특별법 RT 독도[獨島] RT 생태계 보전 지역[生態系保全地域] RT 섬(지형)[島]
독도 문제[獨島問題]	UF 독도 분쟁[獨島紛爭] UF 독도 영유권 논쟁[獨島領有權論爭] UF 독도 영유권 문제[獨島領有權問題] UF 독도 영유권 분쟁[獨島領有權紛爭] BT 영토 분쟁[領土紛爭] RT 독도[獨島] RT 독도 영유권[獨島領有權] RT 안용복(인명)[安龍福]

독도법[讀圖法]	KDC 559.341 KDC 446.8 DDC 623.71 BT 군사 교육[軍事教育] RT 지도(자료)[地圖] RT 방향 측정법[方向測定法]
독도 분쟁[獨島紛爭]	독도 문제[獨島問題]
독도 수비대[獨島守備隊]	RT 전투 경찰[戰鬥警察] RT 독도[獨島] RT 독도 의용 수비대[獨島義勇守備隊]
독도에 나무 심기[獨島--]	AUT 신현득(인명)[申鉉得] YEA 1994
독도 영유권[獨島領有權]	RT 독도[獨島] RT 독도 문제[獨島問題] RT 독도 의용 수비대[獨島義勇守備隊]
독도 영유권 논쟁 [獨島領有權論爭]	독도 문제[獨島問題]
독도 영유권 문제 [獨島領有權問題]	독도 문제[獨島問題]
독도 영유권 분쟁 [獨島領有權紛爭]	독도 문제[獨島問題]
독도 의용 수비대 [獨島義勇守備隊]	RT 독도 영유권[獨島領有權] RT 독도 수비대[獨島守備隊] RT 독도 경비[獨島警備]

4. UN 및 국가기관에서의 독도표기 현황 분석

4.1 지명위원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명의 결정은 UN산하의 유엔지명위원회(UNGEN)와 더불어 미국지명위원회(USBGN)가 결정 관리하고 있다. 미국지명위원회는 미국 내 기관이지만 전세계 지명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엔지명위원회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4.1.1 미국지명위원회

미국지명위원회(USBGN: United States Board on Geographic Names)는 1890년 Benjamin Harrison 제23대 대통령 지시로 처음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에서는 미국정부간행물에 표기되는 각종 지명의 표준표기를 위한 정부기구 간 합동 조직으로 국내지명위원회(DNC: Domestic Names Committee)와 해외지명위원회(FNC: Foreign Names Committee)의 2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지명위원회는 중앙정보부(CIA), 국방부, 국무부 및 의회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지리공간정보청이 지원하는 구조이다.

미국지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표준지명이

결정되며 이에 따른 표준지명찾기서비스가 제공된다. 해외지명위원회의 결정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 업무에만 영향을 미치며, 민간부문에 대한 강제적 영향을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그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이다.

표준지명확인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독도표기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미국지명위원회의 저록

Liancourt Rocks(BGN Standard)
Take Sima(Variant)
Take-shima(Variant)
Tok-to(Variant)
Tok-do(Variant)
Chuk-to(Variant)
Hornet Island(Variant)
Dogdo Island(Variant)
Dog-do(Vari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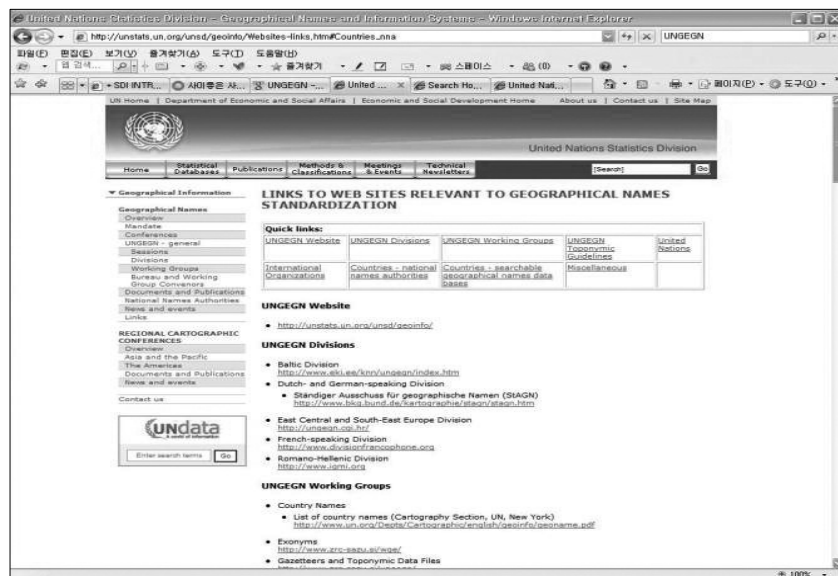
상기의 채택된 표목어는 9개의 저록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를 지명위원회에서 선정하는 표준어, 즉 1차 저록어로 보고 나머지 다케시마, 죽도, 독도 등 8개를 2차 저록어로 설정하고 있다.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라는 명칭을 1977년 7월부터 사용해왔으며, 2008년 7월 독도영유권 관련 사항에 대해 주권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한 상태이다.

4.1.2 유엔지명위원회

국가적 수준의 지명표준화를 위해 국가 간 조정을 목적으로 1958년에 설립된 유엔지명위원회(UNGEGN: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는 유엔 가입국가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상 2년마다 개최된다(그림 2 참조).



<그림 2> 유엔지명위원회(UNGEGN) 홈페이지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5년마다 개최되며 2006년을 기준으로 13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유엔지명위원회의 지명표준화는 각국이 자국의 공식지명에 대한 지침을 제출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명표준화와 관련된 2개의 지침을 정식으로 등록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2002년 처음으로 참석하여 국어의 로마자화 원칙을 제시하였으나 정식 지침을 등록하지는 않았다.

유엔지명위원회 차원에서는 현재까지 독도 표기를 둘러싼 유엔 차원의 대립은 없었으나 독도표기에 대한 현황은 <그림 3>에서와 같이 일본의 국토지리원이 제공하는 지명검색서비스는 링크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항목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4.2 한국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의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은 측량기준점, 국가기본도와 같은 다양한 지리정보를



<그림 3> 유엔지명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일본지명검색서비스 검색

생산, 유지 및 배포할 뿐만 아니라 측량 및 지도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단체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다. 우리나라의 측량 및 지도제작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은 최신의 지리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명정보서비스에서 독도를 검색한 결과 독도로 표기하고 있으며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도를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산 1-37번지로 명기하고 있다.

4.3 日本 國土地理院

日本 國土地理院(Geographical Survey Institute)은 국토의 기반이 되는 지리공간정보를 정비 및 제공하고 지리공간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며, 일본의 재해·재난을 위해 국토의 상태를 파악하는 국가기관이다. 이 기관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으며, 통계자료에 각주까지 달아가면서 독도를 일본의 시마네현 일부로 명시하고 있다(그림 5 참조).

5. 문헌분류표에서의 독도표기 현황 분석

5.1 미국 의회도서관분류표

미국 의회도서관분류표(LCC: Library Congress Classification)는 1904년에 전체적인 개요가 완성되었고, 26개의 알파벳 문자 A부터 Z까지 중에 I, O, W, X, Y는 제외한 21개의 문자를 각각 주류(Class)로 설정하고 있다.



<그림 4>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정보서비스에서 독도 검색 결과 화면

市区町村名	平成19年 面積(0m ²)	平成18年 面積(0m ²)	備考	増減面積 (0m ²)	摘要	参考値(0m ²)
島根県	6,707.78	6,707.57		+0.21		
松江市	530.27	530.22		+0.05	埋立等	
浜田市	689.60	689.52		+0.08	埋立等	
出雲市	543.48	543.43		+0.05	埋立等	
益田市	733.16	733.16				
大田市	436.11	436.11				
安来市	420.97	420.97				
江津市	268.51	268.51				
雲南市	553.37	553.37				
八束郡 東出雲町	42.64	42.64				
仁多郡 奥出雲町	368.06	368.06				
飯石郡 飯南町	242.84	242.84				
鏡川郡 斐川町	80.64	80.64				
邑智郡 川本町	106.39	106.39				
美郷町	282.92	282.92				
島吉町	419.22	419.22				
鹿足郡 津和野町	307.09	307.09				
吉賀町	336.29	336.29				
隠岐郡 海士町	33.51	33.51				
西ノ島町	56.04	56.01		+0.03	埋立等	
知夫村	13.70	13.70				
隠岐の島町	242.97	242.97	A			

A: 隠岐郡隠岐の島町の面積には、竹島の面積0.23km²が含まれています。

〈그림 5〉 日本 國土地理院에서 독도 관련 지리데이터 제공 화면

1993년에 모든 주제를 망라하여 발간한 LCC를 기준으로 할 때 49권의 분책으로 되어 발행되어 있는데 이를 Schedule이라고 하며, 각 Schedule은 주류 또는 강목(Subclass)을 단위로 하고 있다. 각 Schedule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서 편찬되므로 각 Schedule을 분야별 전문분류표로 간주하여도 무방하며, 각 Schedule별로 편찬연도가 다를 수도 있다.

LCC의 기호체계는 알파벳대문자로 강목까지 전개하고 있으며, 본표내에 또는 필요한 경우 각 주제마다 별도의 형식구분표(보조표)가 마련되어 있고, 문자와 숫자의 혼합기호법을 채택하고 있다(오동근 2005).

LC분류표상 독도가 어떻게 표기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리 주제 분야와 역사 주제분야의 분류표를 살펴보면 〈표 5〉, 〈표 6〉과 같다.

LCC에서 지리의 주류는 “G”이며 우리나라 지리의 분류번호는 7900에서 7904까지 해당된다. 7902에 지역, 자연지형, 섬 등을 알파벳 대문자와 숫자로 혼합하여 분류하도록 한다. 독도 지리 관련 책을 분류할 경우 G7902.T655가 된다.

한편 역사의 주류는 “D”이며 우리나라 역사는 강목으로 “DS”에 해당된다. 상세분류는 901에서 937까지 번호를 부여받고 있다. 924와 925가 지역의 역사와 기술에 해당되어 독도 관련 역사책을 분류할 경우 DS924.T655가 된다.

LC에서 “Tok island”로 검색했을 때 총136개 문헌이 검색되었다. 그중 『A fresh look at the Dokdo issue』라는 책은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제어로 Tok Island(Korea) - History, Tok Island(Korea) - International status가 나오며 분류는 DS924.T655로 두고 있다.

〈표 5〉 LCC의 지리 주제분류표

G	Geography(General). Atlases, Globes, Maps
G7900-7904	South Korea(Republic of Korea). Chosen Including maps of Korea as a whole
G7902	Regions, natural features, islands, etc., A-Z e.g. .H3 Han River

〈표 6〉 LCC의 역사 주제분류표

D	History(General). Europe(General)
DS	Asia
DS901-937	Korea
DS924-929	Local history and description
DS924	Provinces, regions, etc., A-Z e.g. .C39 Cheju-do
DS925	Cities, towns, etc., A-Z e.g. .P8 Pusan .S4 Seoul

A fresh look at the Dokdo issue : Japanese scholars review historical facts...

LC Control No.: 2006399978
LCUN Permalink: <http://lcn.loc.gov/2006399978>
Type of Material: Book (Print, Microform, Electronic, etc.)
Contents: How to achieve a fair solution to the Senkaku Islands and Takeshima problems / Matsumoto Takeo
 Is Takeshima Japanese indigenous territory? / Naitō Seichū
 An introduction to premodern historical studies on Takeshima / Ikeuchi Satoshi
 Ahn Yong bok in Oki / Naitō Seichū.
Subjects: [Tok Island \(Korea\) --History.](#)
[Tok Island \(Korea\) --International status.](#)
[Japan --History --Tokugawa period, 1600-1868.](#)
[Japan --History --1868-](#)
LC Classification: [DS924.T655](#)
Links: [Table of contents only](#)

〈그림 6〉 LC에서 “Tok island”로 검색한 결과 중 일부

5.2 한국십진분류표

1947년에 발행된 박봉석의 조선십진분류표 (KDC(P))는 보편적으로 많은 도서관들에 의

해 사용되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개정과 증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운 주제를 분류할 수 없다는 큰 단점으로 인해 소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4년 한국도서관협회에 의해 DDC의

장점을 살리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십진 분류표(KDC: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초판이 발행되었다. 이후 1966년에 수정판, 1980년에 제3판, 1996년에 제4판이 간행되었으며, 현재 제5판이 개정 중에 있다. 4판의 지리구분 표에 의하면 독도에 주어진 분류기호는 <표 7>과 같다.

KDC 분류표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리구분을 보통 시, 군까지 표기하고 있으나 “리”에 해당하는 독도를 특별히 표기함으로써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에 독도 관련 검색을 해본 결과 『한국 독립의 상징) 독도』라는 책의 서지사항에 일반 주제명표목으로 독도(지명)(獨島)로 표시하고 있으며 분류기호는 911.829로 두고 있다.

5.3 일본십진분류표

일본십진분류표(NDC: Nippon Decimal Clas-

sification)는 青年圖書館員聯盟에서 1928년에 발간한 기관지 ‘圖研究’에 和漢洋圖書共十進分類表案을 발표한 것이 그 기원이 되었다. 1929년 ‘日本十進分類法’으로 改題되었고, 2차대전 후 국립국회도서관이 창설되면서 분류에 NDC를 채용하였고 이의 유지, 관리가 日本圖書館協會로 이관되었다. 이후 1931년에 제2판, 1935년에 제3판, 1939년에 제4판, 1942년에 제5판, 1950년에 제6판, 1961년에 제7판, 1978년에 제8판, 1995년에 제9판이 간행되었다(백혜경, 남태우 2003). 9판에 독도에 대한 분류기호는 <표 8>과 같다.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日本國立國會圖書館에서 독도 관련 검색을 해본 결과 『島根縣竹島の研究(도근현죽도의 연구)』라는 책의 서지사항에서 지리명표목으로 竹島//タケシマ(다케시마)로 표시하고 있으며 분류기호는 217.3으로 두고 있다.

<표 7> KDC의 지리 주제분류표

900	역사
910	아시아
911	한국
911.001-911.0099	일반 역사 관련
911.01-911.077	시대별 한국사
911.1-911.991	지역별 역사
911.8	경상도(영남지방)
911.81	경상북도
911.82	울진군, 봉화군, [영풍군], 영주시, 영양군, 영덕군, 안동시, [안동군], 문경시, [문경군],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911.829	울릉군(우산국, 우산, 우릉, 무릉, 울릉), 독도
980	지리
981	아시아 지리
910과 같이 지역구분하고, 980.1 -.8과 같이 세분한다. 예: 한국지리 981.1	



〈그림 7〉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독도 검색 화면

〈표 8〉 NDC의 지리 주제분류표

200	歷史〈歴史, 傳記, 地理〉
〈210.270 各國・各地域の歴史〉 → : 291/297 ; 302:312	
211/219	各地
217	中國地方
217.3	島根縣〔出雲國, 石見國, 隱岐國〕
	松江, 出雲, 大田, 江津, 浜田, 平田, 益田, 安來



〈그림 8〉 日本國立國會圖書館에서 독도 검색 결과 화면

6. 결 론

우리나라는 독도의 체계적 연구 및 관심과 관련하여 역사적·외교적·문화적·정치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본의 전략적이고 집요한 노력에 비하면 미비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문헌정보학적 분야에서 독도표기 문제를 연구한 것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계 뿐만 아니라 표준접근점으로 서 주제명 표목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LCSH는 독도를 Tok Island로 표기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명을 결정하는 미국지명위원회와 유엔지명위원회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헌정보학적 연구가 이루어져 국제적 수준의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LCC·KDC·NDC 분류표에 나타난 독도의 표기 부분과 분류를 살펴본 결과 KDC는 NDC에 비해 독도를 특별하게 다루고 있었다. NDC에는 다케시마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KDC상에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명시되어 있다.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지금 진행 중인 KDC 5판 개정 시 독도만큼은 상징성의 의미로 독립된 분류번호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독도뿐 아니라 끊임없이 명칭 및 표기에 문제가 일고 있는 동해 및 이어도와 같은 한국영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잘못된 명칭이 있을 경우 국제적으로 수정을 요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도서관계에서 구성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셋째, 미국 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는 자료조직 및 정보검색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접근

점이 되는 표목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독도 관련 주제명표목표 변경 회의를 열려고 했던 일이 밝혀져 문헌정보학적 분야에서도 독도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더구나 LCSH가 국제적인 주제 표목으로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독도와 같이 특정한 주제표목의 채택 여부 및 그 표목의 형태는 LCC와 LCSH 이용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현재 미국회도서관에서는 독도가 표목으로 채택되어 있지만 독도를 표목으로 채택하였다고 해서 미국회도서관이나 미국 국회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LCSH가 주제표목을 결정할 때 참조하는 참고문헌들의 견해를 반영한다고 한다. 실제 LCSH는 새로운 표목을 추가할 때나 기존의 표목을 수정하고 삭제할 때 많은 참고문헌들을 참조한다. 독도와 다케시마처럼 국가간 정치적, 역사적 논쟁과 이견의 대상이 되는 명칭들 중에서 어떤 것이 표목으로 채택되는가는 이 같은 참고문헌들에 수록된 정보에 의존한다. 이 참고문헌들의 대부분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학문적, 정치적, 사회적 동향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채택된 표목의 모양은 외부적인 의견의 추세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독도 관련 변경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지려고 했던 시도 자체도 이와 같은 맥락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지명 및 표기에 대한 국제적인 수정 요구와 같은 직접적인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주제명표목어가 얼마나 많은 참고문헌을 가졌느냐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독도와 관련된 학술적 성과를 통한 간접적인

노력도 필요하며 시의적절한 대응방법도 절실

한 시점이다.

참 고 문 헌

- 경상북도. 2006. 『독도 올바로 알기』.
- 국회입법조사처. 2008. 『국제지명표준화 관점에서 바라본 독도표기 문제 및 대응방안』.
- 김정임, 남태우. 2003. 주요 십진분류표에서의 보조표 비교분석 연구: DDC, KDC, NDC를 중심으로. 『한국정보관리학회 제10회 학술대회 논문집』, 83-94.
- 남태우. 1982. 『목록에 있어서의 표목법의 변천고』,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편집부. 1991. 독도(獨島)는 진정 우리의 땅. 『檀庵文苑』, 2: 53-62.
- 독도연구보존협회, 독도학회. 2005. 『우리땅 독도이야기』, 독도연구보존협회.
- 백혜경, 남태우. 2003. 한·중·일 삼국의 불교분야 분류법 비교연구: KDC, CLC, NDC를 중심으로. 『한국정보관리학회 제10회 학술대회 논문집』, 127-138.
- 慎鏞廈. 1996. 독도 主權, 死活 걸린 문제이다. 『신동아』, 439: 590-609.
- 양태진. 1996. 한·일 독도영유권 분쟁의 역사. 『역사비평』, 35: 134-147.
- 오동근. 2005. 『자료조직론해설 1(문헌분류편)』.
- 오흥택. 2008. 일본 제2, 제3의 대응 시나리오 단독 입수. 『월간중앙』, 34(9): 106-111.
- 柳永玉. 1996. 한일 양국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적 검증. 『군사논단』, 7(1): 55-74.
- 최우섭. 2006.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논리 분석과 한국의 대응 전략』,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 윤정옥. 2001.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 표목표(LCSH)의 한국과 일본 관련 주제표목의 비교연구. 『도서관』, 56(1): 30-55.
- 홍종필. 1996. 역사적 시각에서 본 독도. 『사회과학논총』, 11: 311-322.
-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
- 대한민국대표114서비스
<<http://www.lets114.co.kr>>.
- 미국지명위원회<<http://geonames.usgs.gov>>.
- 미국회도서관 온라인목록
<<http://catalog.loc.gov>>.
- 브리태니커백과사전영문판
<<http://www.britannica.com>>.
- 브리태니커백과사전한국판
<<http://www.britannica.co.kr>>.
- 日本國土地理院<<http://www.gsi.go.jp>>.
- 日本國立國會圖書館<<http://opac.ndl.go.jp>>.
- 日本郵便
<<http://www.post.japanpost.jp/index.html>>.
- 한국국토지리정보원<<http://www.ngi.go.kr>>.